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9. 07. 21.)

개정 (2020. 11. 13.)

개정 (2021. 05. 0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의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② 정기회는 분기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7일 전에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상법 제393조의2의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 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상법 제412조의 3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업무·재산 조사

나. 이사의 보고 수령

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라.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마.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정 및 해임

바.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사.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아. 감사계획 및 결과

자.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차.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카.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파.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제12조 (내부회계관리제도)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용실태평가를 대리보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의 사본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인의 선임 등

제15조 (선임)

- ①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한다.
-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7조 (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8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독립성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 ①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로 ‘경영진단팀’을 둔다.
- ②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소집통지, 부의안건 정리 및 배포, 의사록의 작성,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 회의 운영 지원과 감사활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